



IC Design Education Center



CONTENTS

001. 카이스트발전재단 접속 및 개인정보 동의하기
002. '기부자 인적사항' 작성하기
003. '약정내용' 작성하기
004. 약정서 등록 클릭
005. 기타(세제혜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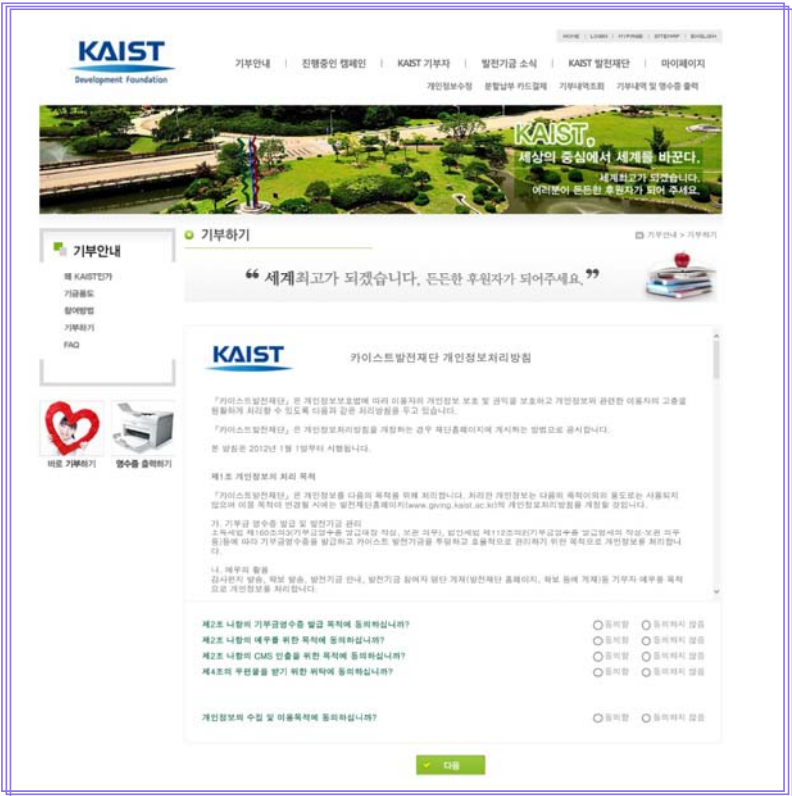
001. 카이스트발전재단 접속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하기

🔗 카이스트 발전재단 바로가기

or

카이스트 발전재단

Search



002. ‘기부자 인적사항’ 작성하기

▶▶ 무기명 처리를 클릭하시면, 기부자
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기부하기

“ 세계최고가 되겠습니다.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.”

약관서 작성

* 기부금 신용카드 결제(일시불 및 분할 납부) 및 온라인 계좌이체는 Internet explorer 환경에서만 가능합니다.

1. 기부자 인적사항

☐ 무기명 처리 (무기명 처리를 클릭하시면 1.기부자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)

* 이름(단체명) * 주민 ☒ 사업자 ☐ 개인

* 귀하의 개인정보는 기부금 납부내역 세무신고 시에 활용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

☐ 통문 ☐ 학사 ☐ 석사 ☐ 박사 ☐ 경영자과정 (해당과정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)
최종학위 학과/전공 졸업년도

☐ 재학생 ☐ 학사 ☐ 석사 ☐ 박사
학과/전공 입학년도

* 기부자 구분

☐ 학부모 자녀이름 학과/전공 입학년도

☐ 교직원 ☐ 교수 ☐ 직원
근무부서 직위

☐ 일반인 ☐ 기업 ☐ 단체 ☐ 기타

* 우편물수령지 ☒ 자택 ☐ 직장

* 자택주소

* 자택전화번호 02 ☒ - -

* 휴대전화번호 010 ☒ - -

* 이메일

003. '약정내용' 작성하기

▶▶ 약정 내용

1. 기금형태 선택
2. 금액 넣기
3. 기금사용용도 : 지정발전기금 선택 후
기타 선택 후 “반도체설계교육센터” 기재
4. 사용방법 : 아니오(원금사용) 선택
5. 기부방법 : 일시불, 분할납부 중 선택

2. 약정내용

* 기금형태

☒ 현금
☐ 유가증권
☐ 부동산
☐ 기타

* 금액

000,000 원 (총 기부금액)

☐ 일반발전기금 (KAIST 우선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KAIST에 위임)
☒ 지정발전기금
(기업의 경우, 약정액 기준 3천만원 초과시 지정사업 기금의 10%는 일반사업 기금으로 사용됩니다. 단, 장학 및 시설기금 제외)

* 기금사용용도

☐ 학과 발전기금
☐ 사회공헌기금
☒ 기타

☐ TEAM KAIST 기금
☐ TEAM KAIST 학과
☐ Honor KAIST 기금
☐ 하루과일 캠페인 기금
☐ 100일의 아침 캠페인 기금

* 사용방법

기부금 원금을 보존하여 발생하는 이자로 지원하는 것을 원하십니까?

☐ 예(원금보존)
☒ 아니오(원금사용)

일시불

☒ 무통장입금
☐ 온라인계좌이체
☐ 신용카드
☐ 방문접수

* 기부 방법

금액 : 매월

2019

06

월

01

일

입금자명 : 홍길동

분할횟수 : 회

납부시작일: 2019

06

월

11

일

☐ 자동이체
(기부자가 직접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에 내방하여 신청)
☐ CMS자동이체
(분할횟수에 따라 매달 지정하신 알자에 자동이체)

예금주 : 약정인과 같은 경우

이체일자 : 25일

거래은행명 : 계좌번호 :

☐ 신용카드
☐ 급여공제

004. 약정서 등록하기

▶▶ 남기실 말씀을 입력 후 약정서 등록을 클릭!

* 남기실 말씀

입금계좌 : 우리은행 270-003359-01-005 / 예금주 : 한국과학기술원

온라인 입금 후에는 전화 또는 팩스로 기부내용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Tel : 042-350-4500 / Fax : 042-350-3500

Email : foundation@kaist.ac.kr

* 발전기금 약정과 동시에 카이스트 발전후원회의 회원이 됩니다.

본 약정서 상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KAIST 발전기금을 약정합니다.

2019

06

월

11

일

약정인

(인)

▶ 약정서 등록

005. 기타 (세제혜택)

- ▷▷ 개인 : IDEC에 기부할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▷▷ 영리법인 : 법정기부금 기부처로 인정되어 연간소득금액의 50% 범위 내에서 손금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.
- ▷▷ 비영리법인 :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됩니다.



IC Design Education Center

THANK YOU